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2. 11. 29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김동원)

검 토 보 고 서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-12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8.

3. 제안이유

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센터의 운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수리비용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13. ~ 11. 2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(2022. 11. 10.)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2. 11. 15. 마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-125호로 제출되어, 2022. 11.18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입니다.
- 개정 취지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 및 센터운영 개선방법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
 - 가. 상위법령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폐지로 인용조문 정비로
 - 제2조(정의)제2호 “장애인휠체어 등”이란 “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“을 “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-- 보조기기 품목 중“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나.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방법 개선으로

- 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)제2항 “센터”를 “센터운영을 위해”로 “위탁하여 운영”을 “지정 또는 위탁”으로 변경하고
- 제5조(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)제1호 “위탁·운영하는”을 “운영하는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※ 지정 및 위탁 비교

지 정	위 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사업의 신속·능률적인 추진 ✓ 1년 단위 협약(지방보조금 사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위탁 추진 기간 소요(2~3개월) ✓ 3년 단위 위탁 (민간위탁에 관한 조례)

다. 불필요한 조문 삭제

- 제4조(위탁 및 운영·수리비용 지원)을 제4조(운영·수리비용 지원)으로 변경하여 제1호 “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”를 삭제 하였습니다.
- 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변경 내용과 효율적인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·반영하고 있어,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7. 기타자료(비용추계서, 관계법규)

가. 비용추계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인용 조항 정비, 운영방법의 변경 및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윤새린
연 락 처	02-3153-1684

나. 관련 법규

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(보조기기의 종류) ①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
2.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
3. 보조기 및 의지(義肢)
4.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
5.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
6. 가사용 보조기기
7. 가정·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
8.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
9.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
10.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
11.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
12.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
1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·기구·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- 위 치 : 성산로4길35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“마포보장구수리센터”
- 운영기관 :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(대표 : 김명규)
- 위탁기간 : 2022. 2. 1. ~ 2023. 4. 30.(1년 3개월)
- 사업대상 :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
- 사업내용 :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
(장애인휠체어 등 수리, 대여, 세척, 상담, 교육, 홍보 및 네트워크사업)
- 사업예산 : 82,400천원(시비 12,400천원 구비 70,000천원)

운영 및 지원 세부 내용

○ 지원대상 및 범위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 300천원 한도
- 일반장애인 : 연 200천원 한도

○ 지원내용

구분	운영일	수리수행		운영시간	수리장소	비 고
센터 수리	상 시 (월~금)	전문수리기사		09:00~18:00	마포보장구 수리센터	수리센터
	첫째주 목요일	전문 수리 업체	케어존	13:00~16:00		센터-업체 계약체결
	둘째주 목요일		휠로피아			
출장 수리	상 시 (월~금)	수리기사 및 업체		09:00~18:00	신청인 자택	
순회 수리	동별 월1회	자전거수리 용역업체		10:00~17:00	각 동별 지정장소	교통행정과 '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' 사업 협조

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탁 경과

- 2006. 3. :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유·무상 수리 지원 계획 수립 (1년 단위 협약)
- 2018. 11. :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- 2019. 1. :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초 위탁 협약 ('19.1.1~'21.1.31)
- 2021. 12. : 현 수탁자와 재계약 ('22. 2. 1 ~ '23. 4. 3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장애인휠체어 등”<u>이란 별 제 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</u>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<u>센터를</u>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장애인복지 시설 등에 <u>위탁하여 운영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<u>위탁 및 운영 · 수리비용 지원</u>)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<u>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이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---</u> <u>보조기기 품목 중</u>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센터 운영을 위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정 또는 위탁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<u>운영 · 수리비용 지원</u>) <삭제></p> <p>① · ②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
제5조(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)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,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·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) ① -----

--- 운영하는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